



KOSBI

제14-17호 2014. 12. 8

중소기업 포커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의
현황 및 과제

책임작성 | 노민선 연구위원(02-707-9843, msnoh@kosbi.re.kr)

※ KOSB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b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1. 서론
2.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 및 보안관리 역량
3.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의 현황 및 성과
4. 중소기업 보안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요약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기술유출 비중이 높고, 유출 피해금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해외 기술유출의 73%로 대부분을 차지함
 -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1건당 피해금액은 9.1억원('08) → 16.9억원('13)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유출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금액은 중소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58.0%(6조 2,574억원)를 차지
 - 최근 3년간 기술유출 비율은 15.3%('08) → 10.2%('13)로 감소하였으나, 1개사당 평균 피해 규모는 16.4억원('08) → 25.4억원*('13)으로 크게 증가함
 - * 중소기업 연 매출액 평균의 20.4%에 해당
 -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들은 3년간 기술유출로 인해 총 6조 2,574억원('13)의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 연간 전체 연구개발비의 58.0%에 해당함
 - 중소기업 기술정보 유출 관계자는 퇴직 임직원과 현직 임직원 등 내부 관계자에 의한 유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투자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며,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 역량 수준이 매우 취약함

-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3,530만원의 보안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전체 매출액의 0.24%에 불과함('12)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은 43.3점으로 '취약 수준'이며, 대기업 대비 66.1% 수준에 불과함('13)
-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보호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 비중은 36.4%('08) → 51.4%('12)로 증가하는 추세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경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사업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수혜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사업 수혜기업은 미수혜기업에 비해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기업 비중과 1개사당 피해금액 모두 낮게 나타남
 - 또한 사업 수혜기업은 미수혜기업보다 기술유출 발생 후 적극적인 조치 실시
- 그러나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중소기업 비중은 50% 미만으로 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제고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 (1)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본계획 수립
- (2)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예산 확대
- (3)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 (4) 중소기업의 보안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1. 서론

- 기술유출 범주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유출 피해로 인하여 기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국가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미치고 있음
 - “산업스파이는 21세기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Alvin Toffler)
 - 우리나라 검찰의 기술유출 범죄 처리사건(대검찰청)¹⁾ : 39건('99) → 448건('12)
 - 미국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GDP의 1~3%로 추정²⁾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기술유출 비중이 높고, 유출 피해금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기업규모별 해외 기술유출 건수(2009~2013)³⁾
 - 중소기업 151건(73%) > 대기업 40건(19%) > 기타 16건(8%)
 -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1건당 피해금액⁴⁾
 - 9.1억원('08) → 14.9억원('10) → 16.9억원('13)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보호 기반 마련과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보안관제서비스, 기술보호 상담 등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2014.11.29 시행)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과 기술보호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관계부처 합동, 창조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 2014.5.

2) PWC, Economic Impact of Trade Secret Theft, 2014.

3)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규모별·분야별 기술유출 현황, 2009~2013.

4)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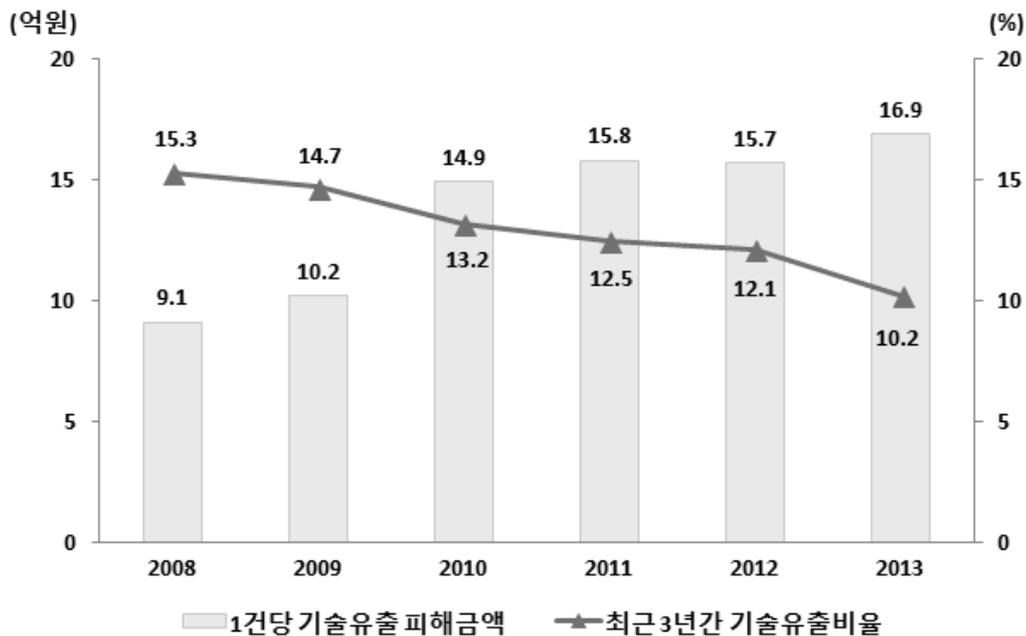
2.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 및 보안관리 역량⁵⁾

가. 기술유출 현황

■ 2013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10.2%가 최근 3년간 기술유출로 인해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피해 중소기업들은 기술유출 1건당 평균 16.9억원의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기술유출 비율은 15.3%('08) → 10.2%('13)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이에 반해 기술유출 1건당 피해금액은 9.1억원('08) → 16.9억원('13)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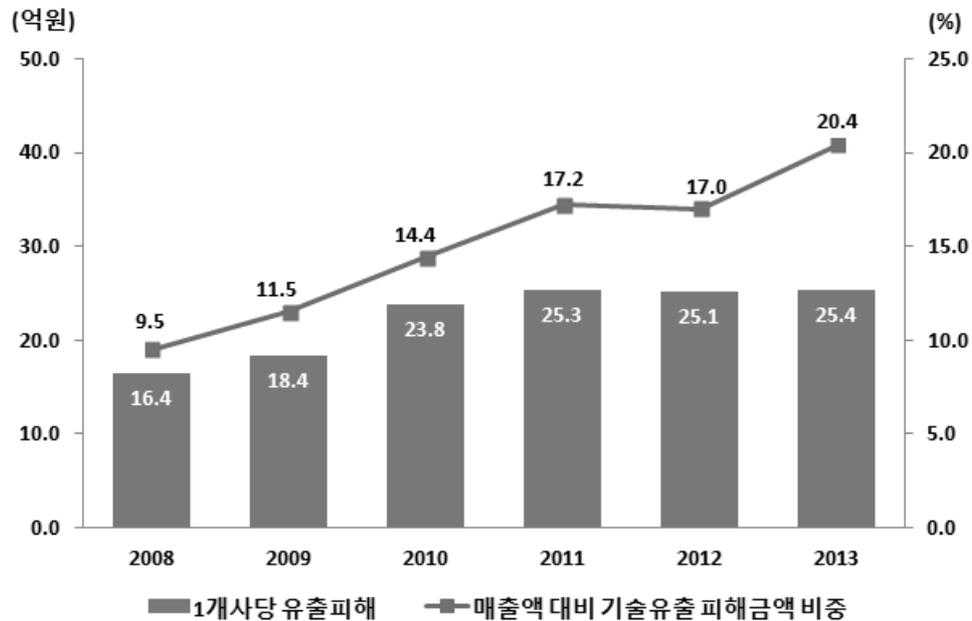
[그림 1]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최근 3년간)



5)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의 주요 결과를 참고하여 재가공함. 본 장에서 제시한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활동조사(미래창조과학부)」의 결과를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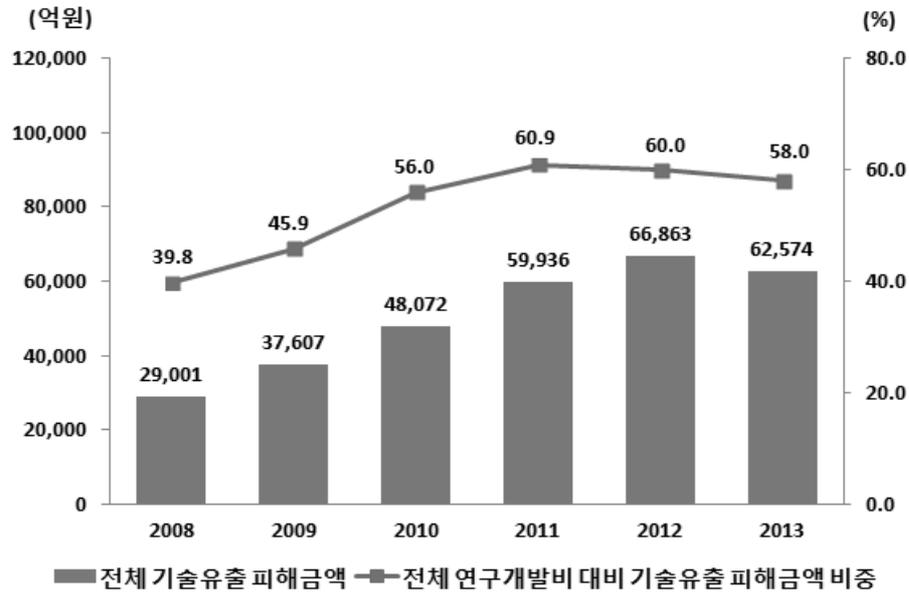
-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들은 1개사당 평균 25.4억원의 매출액 감소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 연 매출액 평균의 20.4%에 해당함
 - 1개사당 평균 기술유출 피해금액은 16.4억원('08) → 25.4억원('13)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연 매출액 대비 기술유출 피해금액 비중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10%를 넘어섰으며, 그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그림 2] 중소기업 1개사당 기술유출 피해금액(최근 3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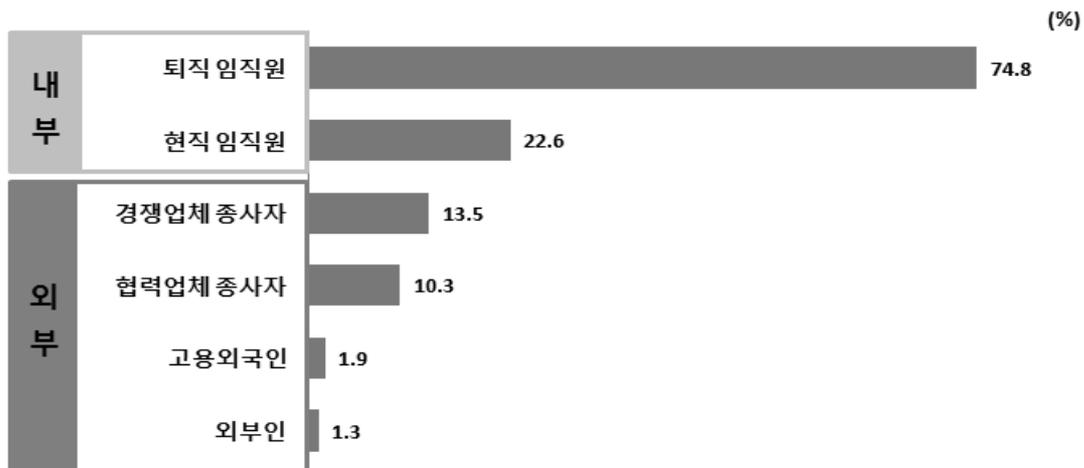
-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들은 기술유출로 인해 최근 3년간 총 6조 2,574억원의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58.0%에 해당함
 - 기술유출 피해금액은 2조 9,001억원('08) → 6조 2,574억원('13)으로 115.8% 늘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 전체 연간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유출 피해금액 비중은 58.0%로 최근 들어 그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아직까지 매우 높은 수준

[그림 3] 중소기업 기술유출 총 피해금액⁶⁾(최근 3년간)



- 중소기업 기술정보 유출 관계자는 퇴직 임직원과 현직 임직원 등 내부 관계자에 의한 유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경쟁업체 종사자, 협력업체 종사자, 고용 외국인, 외부인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 기술정보 유출 관계자(2013)(복수응답)



6) 전체 기술유출 피해금액은 「연구개발활동조사(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 수행 중소기업 수에 기술유출 비율과 1개사당 피해금액을 곱하여 산출하였음

■ 최근 들어 기술유출 사건 발생 이후 민·형사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형사상 조치는 관계자(사) 고소고발이 15.5%('07) → 36.8%('13),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6.6%('07) → 20.6%('13)로 크게 증가하였음
- 관계자(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상 조치는 6.6%('07) → 30.3%('13)로 20%p 이상 늘었음
- 기술유출 이후 특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지만, 35.5%('13)로 아직까지 높은 수준

<표 1> 기술유출 발생 이후 중소기업 조치사항(복수응답)

(단위 : %)

구분	2007	2009	2011	2013
특별한 조치 미실시	52.6	42.1	36.2	35.5
관계자(사) 고소고발	15.5	16.7	35.1	36.8
수사기관에 의뢰	6.6	9.5	24.3	20.6
관계자(사) 손해배상 청구	6.6	5.0	8.1	30.3
보안강화 관련 조치사항	27.2	29.0	24.3	36.1
기타	11.7	7.2	8.1	5.1

나. 기술유출 사례

(1) 유망 중소기업의 농기계 첨단기술(HST) 유출기

■ 사건개요

- A사의 전략영업팀장은 퇴사하면서 HST 설계도면 1,551장을 반환하지 않다가 이 중 44장을 국내 경쟁업체 4곳에, 44장 중에서 13장을 중국업체에 유출

■ 유출대상

- HST(Hydro Static Transmission, 유압무단변속기) 기술
 - HST는 농기계의 전·후진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으로, HST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피해회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만 보유하고 있음
 - 기술개발을 위해 43억원의 정부출연금 투입

■ 조치사항

- 기술유출자를 구속하고 기술유출에 가담한 경쟁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

(2) 중소기업의 금융화자동기기 프로그램 및 소스 관련 핵심기술 유출⁸⁾

■ 사건개요

- 대기업 B사가 중소기업 C사에 금융화자동기기(CD/ATM) 유지보수를 위한 제안서를 요청하면서 기존 유지보수 계약과는 다르게 핵심기술 자료를 요구
- 중소기업 C사가 대기업 B사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절하자 대기업 B사는 일방적으로 제품 구매를 중단하고, 기존 B사에 상주하던 피해 기업 직원의 컴퓨터에서 핵심 기술을 탈취

■ 유출대상

- 금융화자동기기 Application Program 및 관련 핵심소스
 - 해당 중소기업은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약 10년간 75억원을 투자

■ 조치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 B사의 행위에 대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이유로 조사에 착수

8)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 사례, 2012.

(3) 리튬이온 2차전지 제조설비 기술유출⁹⁾

■ 사건개요

- D사의 설계기술자가 이직하면서 리튬이온 2차전지 제조설비 도면 기술 유출. 이직한 회사는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조물을 제작하여 중국업체에 판매

■ 유출대상

- 리튬이온 2차전지 제조설비 기술
 - 해당 기술은 대체에너지 개발 관련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으며, 향후 시장규모는 3년간 5,000억원 정도로 추정

■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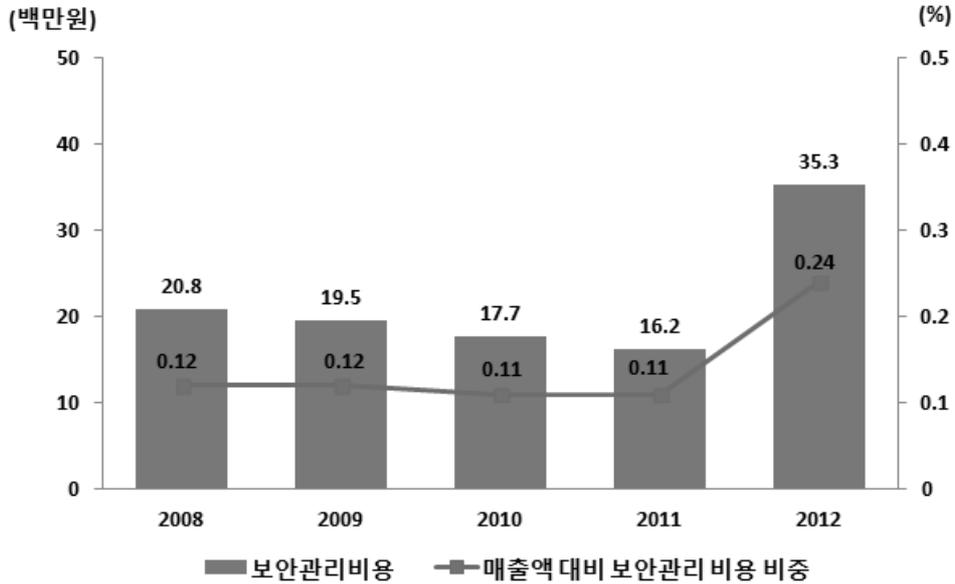
- 경찰은 D사의 전 설계기술자와 이직회사 대표 등을 불구속 입건

다. 보안관리 역량

-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3,530만원의 보안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전체 매출액의 0.24%에 불과함
 - 2012년 들어 중소기업이 기술보호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했지만,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

9) 충북지방경찰청 보도자료(2014. 3. 4.)

[그림 5]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투자 현황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은 43.3점으로 ‘취약 수준’이며, 대기업 대비 66.1% 수준임

-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은 매우 취약

<표 2>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단위 : 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역량점수	47.0	45.9	42.6	34.9	43.3
대기업 대비 수준	58.7	60.6	56.5	55.9	66.1

■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보호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 비중이 36.4%('08) → 51.4%('12)로 증가하는 추세

- 이는 최근 들어 신규로 설립하는 연구소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
 - 중소기업 연구소 수(KOITA) : 15,696개('08) → 27,154개('13) [연평균 11.6% ↑]

3.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의 현황 및 성과

가. 추진 경과

■ 2005년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최초 실시(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보안교육 등)

■ 2007년

- 중소기업 기술유출 통계조사 최초 실시(95% 신뢰수준, 허용오차 $\pm 3.0\%p$ 이내)
- 해외 산업보안 세미나 최초 실시

■ 2008년

- 기술자료 임치제도 시행(8월)

■ 2009년

- 기술자료임치센터 개소(2월)
- 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수준 조사 최초 실시
-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 개소(8월)

■ 2011년

-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개소(3월)

■ 2012년

- 중소기업청 R&D과제의 기술임치 의무화

■ 2014년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1월 29일 시행)
 - 법률(2014. 5. 28 공포), 시행령(2014. 11. 19 공포)

나. 기술보호 지원정책 현황

(1) 기술보호 지원예산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예산은 2014년 기준 65.7억원으로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함

- 중소기업청 전체 예산 대비 기술보호 지원예산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0.33%에 불과함

<표 3>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술보호 예산	2,995	2,178	2,660	3,700	5,534	6,570
중소기업청 예산 대비 비중	0.10%	0.11%	0.13%	0.17%	0.29%	0.33%

(2)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 기업 환경에 적합한 기술적·물리적 보안 솔루션 구축 등 기술보호 인프라 구축을 지원

- 2010년부터 사업이 폐지되었다가 (옛)지경부의 '산업기술보호설비구축 지원사업' 이관에 따라 2013년부터 추진

<표 4>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실적

(단위 : 개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2012	2013
지원기업 수	51	28	×	26	27	×	27
누적	51	79	79	105	132	132	159

(3)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

-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기술자료임치센터’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이 유출된 경우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
 - 임치제도 시행 이후 이용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R&D 과제에 대한 임치의무화의 영향으로 2012년 이후 이용실적이 급격하게 증가

<표 5>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당해년도	신규	26	118	242	447	2,315	3,324
	갱신	0	2	65	171	391	2,361
	합계	26	120	307	618	2,706	5,685
누적		26	146	453	1,071	3,777	9,462

(4) 기술보호 상담센터 운영

- 국내·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법률 등 분야별 전문상담을 지원
 - 현장클리닉과 해외 진출 중소기업 대상 전문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

<표 6> 기술보호 상담센터 이용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43	387	289	517	898
누적	43	430	719	1,236	2,134

(5) 기술지킴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침해사고 예방, 탐지 및 전파, 대응 등의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 2011년 서비스 시행 이후 지원실적이 연평균 100% 이상 크게 증가

<표 7>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1	2012	2013
건수	253	521	1,019
누적	253	774	1,793

<참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2014.11.29 시행)

*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가 생산·생산 예정인 제품 혹은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적인 기술·정보

■ 제정목적

-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

■ 기술보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 기술보호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제5조)
- 기술보호정책 협의·자문(제6조)
- 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제7조), 기술 보호지침 제정(제8조)

■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제9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보호 지원(제10조)
- 중소기업청장의 의견제시·개선권고(제11조), 중소기업기술보호 진단·자문(제12조)
-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제13조)

■ 기술보호의 기반 조성

-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제14조), 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제15조)
-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제16조), 기술보호 홍보·교육(제17조)
- 기술보호 관제서비스 제공(제18조), 보안시스템 구축지원(제19조)
- 국제협력(제20조), 기술보호 상생협력(제21조)

■ 기타

-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가능(29조)
-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운영(제23조)

다. 기술보호 지원정책 성과¹⁰⁾

(1) 기술보호 지원사업 인지도

-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중소기업 비중은 50% 미만으로 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원사업 중에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의 인지도가 45.7%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대비 인지도가 10.3%p 증가함
 -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보호 상담서비스, 기술지킴서비스 등의 경우 인지도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함

<표 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인지도

(단위 : %, %p)

구분	2012	2013	증감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35.4	45.7	▲10.3
기술자료 임치제도	45.1	44.6	▽0.5
기술보호 상담서비스	48.5	43.4	▽5.1
기술지킴서비스	41.7	36.4	▽5.3

10)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의 주요 결과를 참고하여 재가공함.

(2) 기술보호 역량(사업 수혜기업 vs. 미수혜기업)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수혜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사업 수혜기업과 미수혜기업 간의 기술보호 역량수준 차이는 4.3p('12) → 5.6p('13)로 커지고 있음

<표 9>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사업수혜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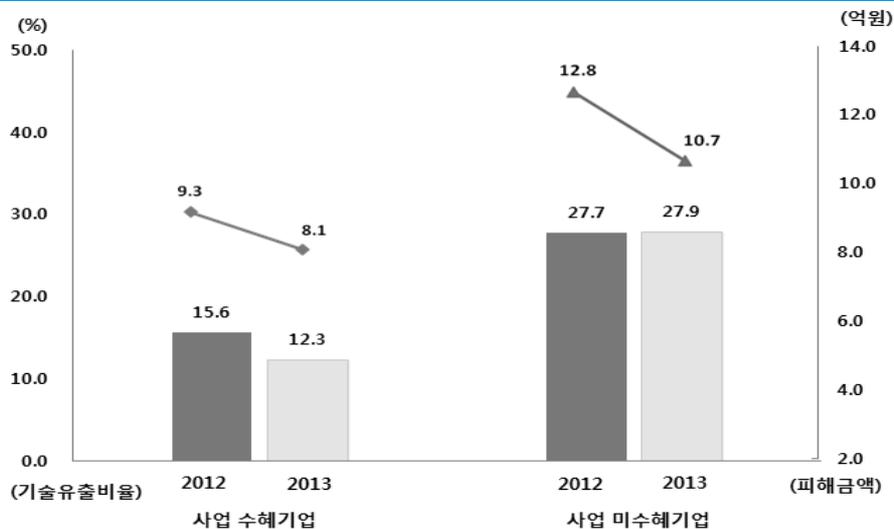
(단위 : 점, p)

구분	2012	2013	증감
사업 수혜기업	38.4	47.4	▲9.0
사업 미수혜기업	34.1	41.8	▲7.4

(3) 기술유출 현황(사업 수혜기업 vs. 미수혜기업)

- 최근 3년간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 비중과 1개사당 피해금액의 경우 기술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이 미수혜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남
 - 기술유출 비율은 사업 수혜기업이 8.1%로 미수혜기업(10.7%)에 비해 낮았음
 - 1개사당 피해금액은 사업 수혜기업이 12.3억원으로 미수혜기업(27.9억원)의 44.1% 수준에 불과함

[그림 6]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사업 수혜여부)



(4) 기술유출 발생 이후 조치사항(사업 수혜기업 vs. 미수혜기업)

■ 사업 수혜기업은 미수혜기업보다 기술유출 발생 이후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

- 사업 수혜기업은 미수혜기업에 비해 특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이 낮았으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0> 기술유출 발생이후 조치사항(사업 수혜여부)(중복응답)(2013년)

(단위 : %, %p)

구분	사업 수혜기업(A)	사업 미수혜기업(B)	차이(A-B)
특별한 조치 미실시	25.0	37.4	-12.4
관계자(사) 고소고발	41.7	35.9	5.8
수시기관에 의뢰	37.5	17.6	19.9
관계자(사) 손해배상 청구	41.7	28.2	13.5
보안강좌 관련 조치사항	62.5	31.3	31.2
기타	8.3	4.6	3.7

4. 중소기업 보안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본계획 수립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예산 확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 중소기업의 보안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1)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등 중소기업 R&D 관련 기본계획과의 연계 강화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

■ 기본계획 수립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관련 기술 동향, 전문인력 수급 추이, 보안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 도모

-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시행계획 수립

(2)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예산 확대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기존사업 활성화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제고에 일정수준 이상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는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 *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지킴서비스 등
- 보안홍보, 보안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관한 신규사업 발굴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예산 확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예산 규모를 중소기업청 전체 예산의 0.33%('14) → 0.5%('17) → 1.0%('2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3)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 기술유출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최근 들어 신규로 설립되는 중소기업 연구소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보안투자에 상대적으로 소극적

* 중소기업 연구소 수(KOITA) : 15,696개('08) → 27,154개('13) [연평균 11.6% ↑]

** 기술보호에 투자하지 않는 중소기업 비중(중기청) : 36.4%('08) → 51.4%('12)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간 연계 강화

- 보안교육 → 보안진단 및 컨설팅 →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의 상호연계 추진
 - 보안교육 이수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 중에서 보안시스템 구축 및 장착을 지원함으로써 '보안의 내재화' 도모

(4) 중소기업 보안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 기술유출방지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 기술유출방지설비의 경우 안전설비투자로 포함되어 7%(대기업 3%)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조특법 제25조)
- 기술유출방지설비를 R&D설비로 인정하여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조특법 제11조)
 - 대기업 : 3% → 3%(동일), 중견기업 : 3% → 5%, 중소기업 : 7% → 10%

■ 보안 관련 지출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에 한해 보안전담인력 인건비, 보안컨설팅 및 지도자문 비용 등에 대해 25%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제10조)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발행인 : 김세종

편집인 : 김세종

발행처 : 중소기업연구원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 타워 (121-904)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www.kosbi.re.kr>

인쇄처 : 경성문화사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